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심층조사 -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

ID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닐슨컴퍼니코리아(유)의 면접원입니다.

저희 닐슨컴퍼니코리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뢰로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정부승인 통계조사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근거해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월

[주관기관]

[대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031-728-7162
E-mail: survey@kead.or.kr
Http://www.kead.or.kr

(주)닐슨컴퍼니코리아(유)
담당연구원

☎ 02-2122-7311
E-mail: moonyo01@nielsen.com
Http://www.nielsen.com/kr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면접 후 기록 (면접원이 기록)

방문 일시	1차방문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	<input type="checkbox"/> 1)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조사불가
	2차방문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	<input type="checkbox"/> 1)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조사불가
	3차방문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	<input type="checkbox"/> 1)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조사불가
응답시간	__시간 __분 동안		조사장소
면접원 성명	(인) (ID :)		슈퍼바이저 확인 (인)
에디터 확인	(인)		검증원 확인 (인)

A. 근로자 현황

다음 근로자 현황은 귀 사업장을 포함한 기업(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단, 질문에서 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은 해당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등 종사상 지위를 불문하고,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 예외)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A01) Q38. 2013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정규직 여부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앞서 응답한 기본조사의 2013년 근로자 현황과 아래의 전체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확인)

(☞ 정규직 + 비정규직 = 전체 근로자)

(☞ 정규직 ≥ 정규직 시간제, 비정규직 ≥ 정규직 시간제

* 정규직 중에서도 다른 종사자 수보다 1시간이라도 적게 일하면 시간제 근로자로 포함(육아 단축 근로자 등)

구 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소 계		남		여	
전 체	(a01_1_5)	명	(a01_1_5a)	명	(a01_1_5b)	명
정 규 직(전체)	(a01_1_1)	명	(a01_1_1a)	명	(a01_1_1b)	명
시간제	(a01_1_2)	명	(a01_1_2a)	명	(a01_1_2b)	명
비정규직(전체)	(a01_1_3)	명	(a01_1_3a)	명	(a01_1_3b)	명
시간제	(a01_1_4)	명	(a01_1_4a)	명	(a01_1_4b)	명

[용어 설명]

1) 정규직: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2) 비정규직(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제외)

: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특수 고용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호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특수 고용 종사자: 사무실, 점포,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제공 방법·근로시간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성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터 소득을 얻는 자(택배기사, 판촉·방문 판매원, 텔레마케터, 정수기 코디 등)
-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 사업체의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 근무에 종사하는 자
- 일일(호출)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3) 시간제: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A02) Q39. 2013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직업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소 계		남		여	
전 체	(a02_1_10)	명	(a02_1_10a)	명	(a02_1_10b)	명
관리자	(a02_1_1)	명	(a02_1_1a)	명	(a02_1_1b)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a02_1_2)	명	(a02_1_2a)	명	(a02_1_2b)	명
사무 종사자	(a02_1_3)	명	(a02_1_3a)	명	(a02_1_3b)	명
서비스 종사자	(a02_1_4)	명	(a02_1_4a)	명	(a02_1_4b)	명
판매 종사자	(a02_1_5)	명	(a02_1_5a)	명	(a02_1_5b)	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a02_1_6)	명	(a02_1_6a)	명	(a02_1_6b)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a02_1_7)	명	(a02_1_7a)	명	(a02_1_7b)	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a02_1_8)	명	(a02_1_8a)	명	(a02_1_8b)	명
단순노무 종사자	(a02_1_9)	명	(a02_1_9a)	명	(a02_1_9b)	명

표준직업분류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52 매장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A03) Q40. 2013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귀사의 상시근로자 입·퇴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표에서 전체 근로자 수 ≥ 장애인근로자 수)
- (☞ 2013년 입사한 종사자 수와 퇴사한 종사자 수를 구분 작성)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년 입사자	(a03_1_1) 명	(a03_1_1a) 명	(a03_1_1b) 명	(a03_2_1) 명	(a03_2_1a) 명	(a03_2_1b) 명
2013년 퇴사자	(a03_1_8) 명	(a03_1_8a) 명	(a03_1_8b) 명	(a03_2_8) 명	(a03_2_8a) 명	(a03_2_8b) 명
정년퇴직	(a03_1_2) 명	(a03_1_2a) 명	(a03_1_2b) 명	(a03_2_2) 명	(a03_2_2a) 명	(a03_2_2b) 명
명예퇴직	(a03_1_3) 명	(a03_1_3a) 명	(a03_1_3b) 명	(a03_2_3) 명	(a03_2_3a) 명	(a03_2_3b) 명
계약만료	(a03_1_4) 명	(a03_1_4a) 명	(a03_1_4b) 명	(a03_2_4) 명	(a03_2_4a) 명	(a03_2_4b) 명
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a03_1_5) 명	(a03_1_5a) 명	(a03_1_5b) 명	(a03_2_5) 명	(a03_2_5a) 명	(a03_2_5b) 명
자발적 이직	(a03_1_6) 명	(a03_1_6a) 명	(a03_1_6b) 명	(a03_2_6) 명	(a03_2_6a) 명	(a03_2_6b) 명
기타	(a03_1_7) 명	(a03_1_7a) 명	(a03_1_7b) 명	(a03_2_7) 명	(a03_2_7a) 명	(a03_2_7b) 명

**A04) Q41. 2012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2013년 창설한 경우, A4 응답하지 않으며, 2012 창설한 경우, A4의 2011년 응답하지 않음)
 - (☞ 2013년과 2012년, 2012년과 2011년 근로자 수 변화가 너무 큰 경우 응답내용 재확인)
 - (☞ 2013년과 2012년 근로자수 확인 필요)
- 검산수식: 2012년 근로자수 = 2013년 근로자수 + 2013년 퇴사자수 - 2013년 입사자수)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2년 12월 31일 기준	(a04_1_1) 명	(a04_1_1a) 명	(a04_1_1b) 명	(a04_1_2) 명	(a04_1_2a) 명	(a04_1_2b) 명
2011년 12월 31일 기준	(a04_2_1) 명	(a04_2_1a) 명	(a04_2_1b) 명	(a04_2_2) 명	(a04_2_2a) 명	(a04_2_2b) 명

B. 모집과 채용

다음은 모집과 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B01) Q42. 귀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로 이용한 모집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b01_1)**

1. 취업알선기관 및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
 2.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
- (→ 1, 2 응답 모두 B03으로 이동)

B02) Q43. 귀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로 이용했던 취업알선기관을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b02_1a)

2순위

(b02_1b)

(☞ B01)에서 1 응답 시 1순위에 “7” 응답 불가능)

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 지방자치단체(일자리센터)
3. 민간·공공 포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4. 학교(대학교 등)
5. 민간 취업알선업체
6. 기타(적을 것: (b02_1_other))
7.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적 없음

**B03) Q44. 귀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로 이용한 자체 모집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b03_1a)

2순위

(b03_1a)

(☞ B01)에서 2 응답 시 1순위에 “5” 응답 불가능)

1. 신문·TV 등 언론매체
2. 자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3. 내부 임직원 추천
4. 기타(적을 것: (b03_1_other))
5.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한 적 없음

**B04) Q45. 귀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b04_1a)

2순위

(b04_1b)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1. 경력
2. 학력
3.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4. 성별
5. 연령
6. 성품태도(책임감 등)
7. 기타(적을 것: (b04_1_other))

B05) Q46. 귀사는 근로자 채용이 일반적으로 용이하셨습니까? (b05_1)

- 1. 매우 어려웠다 (→B05-1로 이동)
- 2.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B05-1로 이동)
- 3. 보통 (→B06으로 이동)
- 4. 다소 용이한 편이었다 (→B06으로 이동)
- 5. 매우 용이했다 (→B06으로 이동)

**B05-1) Q47. (B05의 1,2번 응답자만) 채용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b05_2a)	2순위	(b05_2b)
------------	----------	------------	----------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 1.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
- 2.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 3.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맞춰줄 수 없어서
- 4. 구직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5. 출퇴근 상의 어려움 때문에
- 6.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 7. 기타(적을 것: (b05_2_other))

**B06) Q48. 귀사의 근로자 채용 전형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④ 면접 응답하지 않는 경우 재확인(대부분의 업체에서 실시))

- 1. 응시 서류 제출 (b06_1_1)
- 2. 필기시험(적성검사 등 포함) (b06_1_2)
- 3. 실기(기능) 시험 (b06_1_3)
- 4. 면접(집단토론 등 포함) (b06_1_4)
- 5. 신체검사 (b06_1_5)
- 6. 기타 (b06_1_6) (적을 것: (b06_1_6_other))

**B06-1) Q49. 귀사의 채용 전형 과정을 거친 응시자들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b06_2)**

(☞ 위 B06문항에서 1번을 응답하지 않았는데, 아래 B06-1에서 1번을 응답할 경우 재확인
위 B06문항에서 2 or 3번을 응답하지 않았는데, 아래 B06-1에서 2번을 응답할 경우 재확인
위 B06문항에서 4번을 응답하지 않았는데, 아래 B06-1에서 4번을 응답할 경우 재확인)

- 1. 응시 서류 작성 기술
- 2. 필기시험 및 실기(기능)에 대한 지식
- 3. 뚜렷한 목표 의식
- 4. 화술 및 의사 전달 능력(면접기술)
- 5. 순발력 및 대처능력
- 6. 응시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 인지
- 7. 기타(적을 것:)

**B07) Q50. 귀사가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큰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주체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b07_1a)	2순위	(b07_1b)
------------	----------	------------	----------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 1. 경영진(사업주·임원·이사회 등)
- 2. 인사관련업무 담당부서(인사팀·총무팀·경영관리팀 등)
- 3. 인력 수요 부서
- 4. 노동조합 등 사내 기구
- 5. 사외 기구·기관·단체 등
- 6. 기타(적을 것: (b07_1_other))

C. 채용계획

다음은 채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임원 포함)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01) Q51. 귀사는 2014년에 신규인력(장애인, 비장애인 포함)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이미 채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c01_1_1)**

1. 있다
2. 없다 (→D01로 이동)
3. 미정 (→D01로 이동)

**C01-1) Q52. 귀사가 올해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하고자 하는 신규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2014년 신규인력 채용계획	(c01_2a_1) 명	(c01_2b_1) 명
관리자	X	(c01_2b_2)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c01_2b_3) 명
사무 종사자		(c01_2b_4) 명
서비스 종사자		(c01_2b_5) 명
판매 종사자		(c01_2b_6) 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c01_2b_7)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01_2b_8)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c01_2b_9) 명
단순노무 종사자		(c01_2b_10) 명

(→ 장애인 근로자 채용인원이 0명인 경우 C01-1-1로 이동)

(☞ 정확한 숫자 “모름” 허용 - 모름은 0과 구분하여 파악)

(☞ 가령 채용계획이 있을 때 전체 근로자는 몇 명 채용할지 모르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는 0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C01-1-1) Q53. 귀사가 2014년 전체 상시근로자는 채용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50인 이상 기업인 장애인 미고용업체에서는 ① 나올 수 없음)

1.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 (c01_3_1)
2.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c01_3_2)
3.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c01_3_3)
4.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c01_3_4)
5.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c01_3_5)
6.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c01_3_6)
7.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c01_3_7)
8.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c01_3_8)
9. 기타 (c01_3_9) (적을 것: (c01_3_9_other))

[용어 설명]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로 근로자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3%
- 민간사업주 : ' 10년 이후 2.3%, ' 12년 이후 2.5%, ' 14년 이후 2.7%

D. 인사노무관리

다음은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임원 포함)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D01) Q54. 현재 귀사는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d01_1)

1. 예
2. 아니오
3. 부분적으로 실시

※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불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D02) Q55.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주당 100시간 이상일 경우 재확인)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	(d02_1) 시간

D02-1) Q56. (A01에서 전체 시간제 근로자 수가 1 이상) 귀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d02_2)

- | | |
|-----------------------------|----------------------------------|
| 1. 인건비 절감(비용 절감)을 위해 | 2. 일시적 수요, 일시적 공석, 휴직대체 등에 따라 |
| 3. 고용유연성(고용조정 용이)을 위해 | 4. 업무 성격(숙련 필요, 고강도 업무 수행 등)에 따라 |
| 5. 정원 동결로 인해 | 6. 근로자가 희망해서 |
| 7. 기타(적을 것: (d02_2_other)) | |

D03) Q57. 귀사의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몇 시간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주당 84시간 이상일 경우 재확인)

(☞ D02+D03이 100시간 넘는 경우 재확인)

(☞ 초과 근로시간이 D02의 소정 근로시간 보다 많을 경우 응답 재확인 요청)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d03_1) 시간

D04) Q58. 귀사는 교대근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d04_1)

1. 예 (→D04-1로 이동)
2. 아니오 (→D05로 이동)

D04-1) Q59. 그렇다면, 귀사의 전체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교대제 형태는 무엇입니까? (d04_2)

- | | | |
|-----------------------------|-----------|-----------|
| 1. 격일제 | 2. 2조 2교대 | 3. 3조 2교대 |
| 4. 3교대 3교대 | 5. 4조 3교대 | 6. 4조 2교대 |
| 7. 기타(적을 것: (d04_2_other)) | | |

- ※ '선택적 근무시간제'란 8~17시 또는 9~18시 또는 10~19시 등 근무시간 선택 대안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시간제로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입니다.

D05) Q60. 다음 중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무시간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선택적 근무시간제 (d05_1_1)
2. 탄력적 근로시간제 (d05_1_2)
3. 재택근무제 (d05_1_3)
4. 보기 중 하나도 없음 (d05_1_4)

D06) Q61. 귀사의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근로자 1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전체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
- (☞ 총 임금/총 종사자 수)
- (☞ 1천만원 이상, 혹은 50만원 이하 시 재확인)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2013년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d06_1)	만원

D06-1) Q62. 국내 동종업계의 평균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귀사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은 어떠합니까? (d06_2)

1.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
2.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3. 동종업계와 비슷하다
4.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5.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다

D07) Q63.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할 때 귀사 근로자 전체의 이직률은 어떠합니까? (d07_1)

1.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
2.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3. 동종업계와 비슷하다
4.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5. 동종업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다

D08) Q64. 귀사의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 고충을 호소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d08_1a)	2순위	(d08_1b)
-----	----------	-----	----------

(☞ 1순위 “없음” 허용, “없음” 시 D9로 이동)

1. 질병이나 건강문제
2.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3. 대인관계 문제
4.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임금, 복리후생, 인사, 근무강도 등)
5. 근무환경문제(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6. 기타(적을 것: (d08_1_other))

D08-1) Q65. 귀사의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에 대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d08_2)

1.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 이용
2.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3. 임원 또는 관리자와의 면담
4. 노동조합을 통해서
5. 별도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
6. 각자 스스로 해결
7. 기타(적을 것: (d08_2_other))

D9) Q66. 귀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d09_1a)	2순위	(d09_1b)
-----	----------	-----	----------

(☞ 1순위 “없음” 허용)

- | | |
|------------|-----------------------------|
| 1. 업무실적 향상 | 2.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
| 3. 건강관리 | 4.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
| 5. 장기근속 | 6. 기타(적을 것: (d09_1_other)) |

D10) Q67.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주거비보조 (임대주택[사택], 기숙사,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월세자금 지원 등) (d10_1_1)
2.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지출 (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등) (d10_1_2)
3. 식사비보조 (급식시설 운영, 외부식당 이용, 식권 제공 등) (d10_1_3)
4.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도서관, 휴게실, 운동장, 체육관 샤워장, 사내씨클 지원 등) (d10_1_4)
5. 보험료지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의 사보험료 지원) (d10_1_5)
6. 경조비 (결혼·출산축의금, 사망조의금, 상병위로금, 퇴직전별금, 장기근속표창 등) (d10_1_6)
7. 자녀학비보조 (근로자 자녀의 정규 학교 학자금 등) (d10_1_7)
8. 근로자휴양 (휴양소, 콘도미니엄, 상여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비 등) (d10_1_8)
9. 통근 비용 (통근버스, 주차비 지원 등) (d10_1_9)
10.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포함) (d10_1_10)
11. 기타 (d10_1_11) (적을 것: (d10_1_11_other))
12. 없음 (d10_1_12)

D11) Q68. 귀사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13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일자리에서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건수 기준으로 작성 / 1명이 2회 발생했다면, 2명으로 기재)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2013년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 발생 근로자 수	(d11_1) 명

D11-1) Q69. 2013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건수 기준으로 작성 / 1명이 2회 발생했다면, 2명으로 기재)

(☞ 산재 인정 근로자 수가 D11의 사고/질병 근로자 수보다 많을 경우 응답 재확인 요청)

구분	전체 상시근로자
2013년 산재 인정 근로자 수	(d11_2) 명

D12) Q70. 귀사는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d12_1_1) | 2.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활동 (d12_1_2) |
| 3. 보호구 지급 및 사용에 대한 활동 (d12_1_3) | 4.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활동 (d12_1_4) |
| 5.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 (d12_1_5) | 6. 근로자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 (d12_1_6) |
| 7. 기타 (d12_1_7) (적을 것: (d12_1_7_other)) | 8. 별도 활동 및 지원 없음 (d12_1_8) |

E. 업무환경

다음은 업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귀사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E01) Q71/Q72/Q73. 귀사의 작업환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보통’ 으로 상정해 다음 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쾌적			→ 불편	
E01-1) Q71. 먼지 정도 (e01_1)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E01-2) Q71. 소음 정도 (e01_2)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E01-3) Q71. 냄새 정도 (e01_3)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E01-4) Q71. 작업 환경 위험 정도 (e01_4)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구분	← 불편		쾌적		→ 불편
E01-5) Q72. 밝기 정도 (e01_5)	① 매우 어둡다	② 어둡다	③ 보통이다	④ 밝다	⑤ 매우 밝다
E01-6) Q73. 온도 정도 (e01_6)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E01-7) Q73. 습도 정도 (e01_7)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E02) Q74. 귀사의 주사업장 업무특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사무직의 경우를 ‘보통’ 기준으로 상정해 다음 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E02-1) 업무의 육체적 강도 (e02_1)	①	②	③	④	⑤
E02-2) 업무의 정신적 강도 (e02_2)	①	②	③	④	⑤
E02-3) 업무의 숙련 요구도 (e02_3)	①	②	③	④	⑤
E02-4) 업무의 창의성 요구도 (e02_4)	①	②	③	④	⑤
E02-5) 업무의 협동 필요성 (e02_5)	①	②	③	④	⑤
E02-6) 업무 자체의 물리적 위험성 (e02_6)	①	②	③	④	⑤

E03) Q75. 귀사의 조직 특성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해당없음
E03-1)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 정도 (e03_1) (☞ 기본조사에서 노동조합 있는 경우 E3-1은 1~5, 없는 경우 E3-1은 6)	①	②	③	④	⑤	⑥
E03-2) 사내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정도 (e03_2)	①	②	③	④	⑤	⑥
E03-3) 전사적 차원의 봉사활동 활성화 정도 (e03_3)	①	②	③	④	⑤	X
E03-4)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e03_4)	①	②	③	④	⑤	
E03-5) 직원들 간 일체감 정도 (e03_5)	①	②	③	④	⑤	

E04) Q76. 귀하(귀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습니까?
(e04_1)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모르겠다 (→E5로 이동)

E04-1) Q77. 그렇다면 귀하의 주사업장은 해당 법률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까?
(e04_2)

1. 의무 사업장이다 2. 의무 사업장이 아니다 3. 모르겠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편의시설: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E05) Q78. 다음 중 귀하의 주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장애인 이동이 편하도록 평탄하게 만든 접근로 (e05_1_1)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e05_1_2)
3. 휠체어장애인의 이동이 편하도록 한 경사로 (e05_1_3)
4. 문턱이 없는 출입문 (e05_1_4)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 (e05_1_5)
6.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있는 소변기 (e05_1_6)
7. 휠체어장애인 등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기 (e05_1_7)
8. 시각장애인의 인지가 편하도록 한 점자블록 (e05_1_8)
9. 기타 (e05_1_9) (적을 것: (e05_1_9_other))
10.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음 (e05_1_10) (→E6으로 이동)

E05-1) Q79.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향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근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e05_2)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보통 4. 도움됨 5. 매우 도움됨

E06) Q80.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귀하의 주사업장에 설치가 필요한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E05) 재확인 후 진행)

1. 정문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장애인 이동이 편하도록 평탄하게 만든 접근로 (e06_1_1)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e06_1_2)
3. 휠체어장애인의 이동이 편하도록 한 경사로 (e06_1_3)
4. 문턱이 없는 출입문 (e06_1_4)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 (e06_1_5)
6.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있는 소변기 (e06_1_6)
7. 휠체어장애인 등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기 (e06_1_7)
8. 시각장애인의 인지가 편하도록 한 점자블록 (e06_1_8)
9. 기타 (e06_1_9) (적을 것: (e06_1_9_other))
10.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음 (e06_1_10) (→E7로 이동)

E06-1) Q81. 귀사는 위에서 선택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e06_2)

1. 정부가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면 설치할 의향이 있다
2.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정부분을 지원하면 설치할 의향이 있다
3.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설치할 의향이 있다

E07) Q82.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귀사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기카드 2번 참고)

(☞ 주사업장이 아닌 전체 기업체 기준)

구분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	
지체장애인 관련	1) 높낮이 작업테이블 (e07_1_1) 3) 작업물 운송장치 (e07_1_3) 5) 특수마우스 (e07_1_5)	2) 특수작업의자 (e07_1_2) 4) 특수키보드 (e07_1_4) 6) 기타 (e07_1_6) (적을 것: (e07_1_6_other))
시각장애인 관련	7) 점자정보단말기 (e07_1_7) 9) 화면확대프로그램 (e07_1_9) 11) 대형모니터 (e07_1_11) 13) 음성출력 소프트웨어 (e07_1_13) 14) 기타 (e07_1_14) (적을 것: (e07_1_14_other))	8) 점자프린터 (e07_1_8) 10) 확대독서기 (e07_1_10) 12)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e07_1_12)
청각장애인 관련	15) 소리증폭장치 (e07_1_15) 17) 화상전화기 (e07_1_17) 19) 기타 (e07_1_19) (적을 것: (e07_1_19_other))	16)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e07_1_16) 18) 신호장치 (e07_1_18)
기타	20) 특별히 없음 (e07_1_20) (→F01로 이동)	

E07-1) Q83. 귀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e07_2)

1. 있다

2. 없다

F. 교육훈련

다음은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임원 포함)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고 구조화되어 작업장 내 또는 작업장 밖(강의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에는 직업훈련, 산업안전교육, 노사관계 교육, 팀워크 형성을 위한 조직개발 활동, 개인의 학원·대학(대학원) 수강료 지원 등 기업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이나 단순히 동료나 선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현장훈련은 제외됩니다.

F01) Q84. 귀사는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직무관련 대학원 비용지원, 교육을 위한 휴가지원, 사내 직무관련 학습 모임 지원 등도 포함) (f01_1_1)

1. 예 (→F02로 이동)
 2. 아니오 (→F01-1로 이동)

F01-1) Q85. 귀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f01_1_2)

1. 업무가 단순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2.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여력이 없다
3. 인력난으로 교육훈련 시간이 주기 어렵다
4.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5.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6.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된다
7.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8. 교육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9. 기타(적을 것: (f01_1_2_other))

(→ 응답 후 F07로 이동)

F02) Q86. 귀사에서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실시하거나 지원한 교육훈련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1. 집단 사내교육훈련 (f02_1_1) | 2. 집단 사외교육훈련 (f02_1_2) |
| 3.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훈련(원격학습 등) (f02_1_3) | 4. 사내 직무관련 학습모임 지원 (f02_1_4) |
| 5. 수탁·협력업체에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f02_1_5) | |
| 6. 모기업·위탁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f02_1_6) | |
| 7. 유급 또는 무급의 교육훈련휴가제 (f02_1_7) | 8. 훈련기관(학원 포함) 수강료 지원 (f02_1_8) |
| 9. 교육기관(대학 등) 학자금 지원·대부 (f02_1_9) | 10.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 수강 배려 (f02_1_10) |
| 11. 기타 (f02_1_11) (적을 것: (f02_1_11_other)) | |

F03) Q87. 귀사에서 작년 한 해(2013.1.1~2013.12.31.)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연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A01의 전체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재확인(2회 이상 등))
 (☞ 건수 기준으로 작성 / 1명이 2회 받았다면, 2명으로 기재)

구 분	전체 상시근로자 수
2013년 교육인원	(f03_1) 명

(→ 근로자 교육인원이 0명이면 F07로 이동)

F04) Q88/Q89/Q90. 귀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2013.1.1.~2013.12.31.) 근로자가 주로 참여했던 교육훈련 분야는 무엇입니까? 주로 참여했던 분야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f04a)	2순위	(f04b)	3순위	(f04c)
-----	--------	-----	--------	-----	--------

(☞ 보기카드 3 참고)
(☞ 2순위, 3순위에만 “없음” 허용)

F05) Q91. 교육훈련이 근로자에 미친 효과에 대해 아래의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효과 없음 ←————→ 효과 있음				
	①	②	③	④	⑤
F05-1) 직무능력 향상 (f05_1)	①	②	③	④	⑤
F05-2) 동기부여와 사기 제고 (f05_2)	①	②	③	④	⑤
F05-3) 이직 방지 (f05_3)	①	②	③	④	⑤
F05-4) 생산성 향상 (f05_4)	①	②	③	④	⑤
F05-5) 회사의 평판 (f05_5)	①	②	③	④	⑤

F06) Q92. 근로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 발생했던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f06_1)

1. 교육훈련 예산 부족
2. 교육훈련 인원 차출에 따른 업무 공백
3. 필요로 하는 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부재
4.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
5. 근로자의 낮은 훈련 참여도
6. 경영진의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이해와 관심
- 7 기타(적을 것: (f06_1_other))
- 8 특별한 애로사항 없었음

(→응답 후 F07로 이동)

F07) Q93/Q94/Q95. 귀사의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f07_1a)	2순위	(f07_1b)	3순위	(f07_1c)
-----	----------	-----	----------	-----	----------

(☞ 보기카드 3 참고)

H. 장애인 고용 인식에 관한 사항

다음은 장애인 고용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H01) Q96.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수행능력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비장애인 우수	동등함	장애인 우수		
H01-1) 직무능력 (h01_1)	①	②	③	④	⑤
H01-2) 생산성 (h01_2)	①	②	③	④	⑤
H01-3) 지시를 따르는 능력 (h01_3)	①	②	③	④	⑤
H01-4) 성실성 (h01_4)	①	②	③	④	⑤

H02) Q97.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조직생활능력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비장애인 우수	동등함	장애인 우수		
H02-1) 조직 적응력 (h02_1)	①	②	③	④	⑤
H02-2) 의사소통 능력 (h02_2)	①	②	③	④	⑤
H02-3) 업무추진 시 협동성 (h02_3)	①	②	③	④	⑤
H02-4) 대인관계 (h02_4)	①	②	③	④	⑤

H03) Q98.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의 어려움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비장애인이 어려움	동등함	장애인이 어려움		
H03-1) 업무관리 (h03_1)	①	②	③	④	⑤
H03-2) 근속관리 (h03_2)	①	②	③	④	⑤
H03-3) 산업안전 관리 (h03_3)	①	②	③	④	⑤

H04) Q99.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제고나 회사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보통	매우 도움됨		
H04-1) 장애인 고용 시 기업 이미지 제고 (h04_1)	①	②	③	④	⑤
H04-2) 장애인 고용 시 회사경영의 도움정도 (h04_1)	①	②	③	④	⑤

H05) Q100. 다음 중 귀사에서 채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장애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h05_1_1 ~ h05_1_17)

(☞ 보기카드 1 참고)

지체	상지	하지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H06) Q101.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 중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h06)

- | | |
|---------------------------|-----------------------------|
| 1. 직접고용 | 2. 간접고용(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등) |
|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 4. 금전적 기부 |
| 5. 기타(적을 것: (h06_other)) | |

② 간접 고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자회사를 별도 설립, 장애인 수가 10인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장
- 연계고용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고용의무기업체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해당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

I.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동 실천하는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 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인지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101) Q102.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더라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01_1)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102) Q103.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1년에 두 번(1월31일, 7월31일 까지) 제출해야 함을 알고 계십니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더라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02_1)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 다음은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기카드 4 참고)

103) Q104. 귀사에서 알고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 (i03_1_1)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용자 ☑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융자지원 (i03_1_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 (i03_1_3)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자회사 운영 시 모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 (i03_1_4)
5.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등의 선임·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i03_1_5)
6.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제공 (i03_1_6)
7.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 (i03_1_7)
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납품 받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감면 (i03_1_8)
9.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i03_1_9)
10. the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 ☑ 사업장 편의시설 진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i03_1_10)
11. 채택근무 지원 ☑ 중증장애인 채택근로 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i03_1_11)
12. 그 외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제지원 (i03_1_12)
13. 기타 (i03_1_13) (적을 것 : (i03_1_13_other))
14. 없음 (i03_1_14)

104) Q105. 귀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 (i04_1_1)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용자 ☑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융자지원 (i04_1_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 (i04_1_3)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자회사 운영 시 모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 (i04_1_4)
5.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등의 선임·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i04_1_5)
6.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제공 (i04_1_6)
7.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 (i04_1_7)
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납품 받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감면 (i04_1_8)
9.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i04_1_9)
10. the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 ☑ 사업장 편의시설 진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i04_1_10)
11. 채택근무 지원 ☑ 중증장애인 채택근로 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i04_1_11)
12. 그 외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제지원 (i04_1_12)
13. 기타 (i04_1_13) (적을 것 : (i04_1_13_other))
14. 없음 (i04_1_14) (→105로 이동)

(☞ 위에서 선택한 항목은 18페이지에서 추가 질문을 진행함.)

[I04에 대한 추가 응답 시작]

I04)에서 () 번 () 제도 선택 했을 경우,	
I04-1) Q106. 귀사는 위 제도가 장애인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04_2_1_1 ~ i04_2_13_1)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보통 4. 도움됨 5. 매우 도움됨	
I04-2) Q107. 귀사는 위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i04_2_1_2 ~ i04_2_13_2)	
1.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없다 3. 제도가 장애인 고용과 무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7.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9. 특별히 없음	2.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이 까다롭다 4. 사업예산이 적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8. 기타 (적을 것: (i04_2_1_2_other ~ i04_2_13_2_other))

I04)에서 () 번 () 제도 선택 했을 경우,	
I04-1) Q106. 귀사는 위 제도가 장애인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보통 4. 도움됨 5. 매우 도움됨	
I04-2) Q107. 귀사는 위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없다 3. 제도가 장애인 고용과 무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7.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9. 특별히 없음	2.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이 까다롭다 4. 사업예산이 적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8. 기타 (적을 것:)

I04)에서 () 번 () 제도 선택 했을 경우,	
I04-1) Q106. 귀사는 위 제도가 장애인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보통 4. 도움됨 5. 매우 도움됨	
I04-2) Q107. 귀사는 위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없다 3. 제도가 장애인 고용과 무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7.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9. 특별히 없음	2.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이 까다롭다 4. 사업예산이 적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8. 기타 (적을 것:)

105) Q108. 귀사에서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 (i05_1_1)
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용자 ☞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용자지원 (i05_1_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지원 (i05_1_3)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 다수고용 자회사 운영 시 모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인정 (i05_1_4)
5.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등의 선임·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i05_1_5)
6.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제공 (i05_1_6)
7.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 (i05_1_7)
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납품 받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감면 (i05_1_8)
9.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i05_1_9)
10. the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 ☞ 사업장 편의시설 진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i05_1_10)
11. 재택근무 지원 ☞ 중증장애인 재택근로 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i05_1_11)
12. 그 외 장애인고용에 따른 세제지원 (i05_1_12)
13. 기타 (i05_1_13) (적을 것 : (i05_1_13_other))
14. 없음 (i05_1_14)

(☞ 위에서 선택한 항목이 앞의 I04 현재 이용하는 지원제도 항목과 동일할 경우, 응답 확인)

※ 다음은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6) Q109. 귀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구인상담 ☞ 구인직종, 구인직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구인 관련 상담 (i06_1_1)
2. 장애인 취업알선 ☞ 고용정보제공, 적합인력추천, 모집대행 등 구인서비스 제 (i06_1_2)
3.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후 취업, 청년장애인 현장연수 기회제공 등 장애인 취업지원 (i06_1_3)
4. 통합고용지원서비스 ☞ 사업장 고용환경 진단 및 직무발굴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 (i06_1_4)
5.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취업 후 일자리 적응 지원 및 부적응 요인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i06_1_5)
6.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 직장 내 장애 및 에티켓, 차별금지 등에 대한 교육 지원 (i06_1_6)
7. 맞춤형훈련 등 직업훈련 ☞ 훈련 전과정을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i06_1_7)
8. 기타 (i06_1_8) (적을 것: (i06_1_8_other))
9. 이용한 적 없음 (i06_1_9) (→107로 이동)

(☞ 위에서 선택한 항목은 20페이지에서 추가 질문을 진행)

[I06에 대한 추가 질문]

I06)에서 () 번 () 서비스를 선택 했을 경우,				
I06-1) Q110. 귀사는 위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i06_2_1_1 ~ i06_2_8_1)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I06-2) Q111. 귀사는 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i06_2_1_2 ~ i06_2_8_2)				
1. 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서비스의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3.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				
4. 서비스 후 취업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서비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7. 기타 (적을 것 : (i06_2_1_2_other ~ i06_2_8_2_other))				
8. 특별히 없음				
I06)에서 () 번 () 서비스를 선택 했을 경우,				
I06-1) Q110. 귀사는 위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I06-2) Q111. 귀사는 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서비스의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3.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				
4. 서비스 후 취업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서비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7. 기타 (적을 것 :)				
8. 특별히 없음				
I06)에서 () 번 () 서비스를 선택 했을 경우,				
I06-1) Q110. 귀사는 위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I06-2) Q111. 귀사는 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 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서비스의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3.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				
4. 서비스 후 취업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5. 서비스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6.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하다.				
7. 기타 (적을 것 :)				
8. 특별히 없음				

107) Q112. 귀사에서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구인상담 ☞ 구인직종, 구인직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에 대한 구인 관련 상담 (i07_1_1)
2. 장애인 취업알선 ☞ 고용정보제공, 적합인력추천, 모집대행 등 구인서비스 제공 (i07_1_2)
3.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후 취업, 청년장애인 현장연수 기회제공 등 장애인 취업지원 (i07_1_3)
4. 통합고용지원서비스 ☞ 사업장 고용환경 진단 및 직무발굴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 (i07_1_4)
5.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취업 후 일자리 적응 지원 및 부적응 요인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i07_1_5)
6.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 직장 내 장애 및 에티켓, 차별금지 등에 대한 교육 지원 (i07_1_6)
7. 맞춤형훈련 등 직업훈련 ☞ 훈련 전과정을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i07_1_7)
8. 기타 (i07_1_8) (적을 것: (i07_1_8_other))
9. 없음 (i07_1_9)

108) Q113. 귀사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i08_1a)	2순위	(i08_1b)
-----	----------	-----	----------

(☞ 2순위만 “없음” 허용)

1. 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 ☞ 의무고용을 미달성 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인상
2. 고용의무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사업주(현행 50인 이상) 범위 확대나 의무고용률(현행 2.7%) 상향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증액 ☞ 장애인을 의무고용율보다 많이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의 증액
4.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5.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6.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확대
7.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8.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9.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자질) 향상 서비스 강화
10.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명단 공표, 정부 입찰제한 등)
11.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비의 구입 지원
12. 기타 (적을 것: (i08_1_other))

※ 109)은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9) Q114. 귀사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i09_1)
(중증장애인을 1명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3. 모른다

109-1) Q115. 귀사는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에 따라 향후 중증장애인을 추가 또는 신규로 고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i09_2_1)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109-2) Q116. 귀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09_2_2)

1. 중증장애인 장려금 지급금액 인상
2. 중증장애인 부담금 감면비율의 확대
3.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장애인 고용인원에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더 많은 가중치란 중증 1명 고용 시, 경증 3~4명으로 인정하는 등 가중치 조정 경우)
4. 중증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5. 세금감면
6.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비 구입 지원, 근로지원인 등 지원
7. 기타 (적을 것: (i09_2_2_other))

※ I10)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질문입니다.

I10) Q117. 귀사는 고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이 의무화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i10)

(☞ 우선, 별도의 설명 없이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의 주요 내용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간접차별, 직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금지, 채용 이전 의학적 검사 금지 등이 포함되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번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간략한 설명 후 2,3 응답)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3. 모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11. 시행)' 은 제1절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1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11조)', '채용 이전 의학적 검사의 금지(12조)'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09.4.11.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중 제11조인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는 시설·장비, 근무시간 조정, 훈련 편의 제공, 평가과정 개선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 I11)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에 대한 질문입니다.

I11) Q118. 귀사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i11)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3. 모른다

I11-1) Q119. 귀사는 2008년 4월 이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i11_1)

1. 있다 (→i11-3으로 이동)
2. 없다 (→i11-2로 이동)

I11-2) Q120. 그렇다면, 귀사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i11_2)

1. 법에 대해 잘 몰라서 2. 교육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3.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 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없어서
5. 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6. 기타(적을 것: (i11_2_other))

I11-3) Q121. 귀사는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i11_3)

1. 있다 2. 없다

J09) Q130.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배려했던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1. 가산점 부여 (j09_1_1) | 2. 연령제한 완화 (j09_1_2) |
| 3. 학력제한 완화 (j09_1_3) | 4. 정당한 편의제공(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등) (j09_1_4) |
| 5. 자격요건 완화(토익, 자격증 등) (j09_1_5) | 6. 신체검사 규정 완화 (j09_1_6) |
| 7. 기타 (j09_1_7) (적을 것: (j09_1_7_other)) | 8. 특별히 배려한 사항 없음 (j09_1_8) |

J10) Q131.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j10_1a)	2순위	(j10_1b)
-----	----------	-----	----------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 | | | | | |
|------------------|-------------------------------|--------------|--------------------|--------------|
| 장애관련: | 1. 장애유형 | 2. 장애정도(중/경) | 3. 의사소통능력 | 4. 이동·동작수행능력 |
| 직업적능력 관련: | 5. 경력 | 6. 학력 | 7.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 |
| 인적특성 관련: | 8. 성별 | 9. 연령 | 10. 성품태도(책임감 등) | |
| 기타: | 11. 기타(적을 것: (j10_1_other)) | | | |

J11) Q132. 귀사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셨습니까? (j11_1)

- | | |
|-------------------------|-----------------------------|
| 1. 매우 어려웠다 (→J11-1로 이동) | 2.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J11-1로 이동) |
| 3. 보통 (→J12로 이동) | 4. 다소 용이한 편이었다 (→J12로 이동) |
| 5. 매우 용이했다 (→J12로 이동) | |

J11-1) Q133. (J11의 1,2번 응답자만)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j11_2a)	2순위	(j11_2b)
-----	----------	-----	----------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2.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3.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4.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5.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6.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7.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8. 기타(적을 것: (j11_2_other))

J12) Q134.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j12_1a)	2순위	(j12_1b)
-----	----------	-----	----------

(☞ 2순위에만 “없음” 허용)

1.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①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응답 시 재확인* 고용의무 없음)
2.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
3.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4.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채용함
5.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6. 기타(적을 것: (j12_1_other))

J13) Q135. 당시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해서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은 어떠했습니까?
(j13_1)

1. 매우 낮았다 2. 낮은 편이었다 3. 비슷했다 4. 높은 편이었다 5. 매우 높은 편이었다

J14) Q136.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 고충을 호소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j14_1a) **2순위** (j14_1b)

(☞ 1순위 “없음” 허용, “없음” 시 J15로 이동)

- | | |
|-------------------------------|---------------------------------------|
| 1.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 2.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
| 3. 대인관계 문제 | 4.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임금, 복리후생, 인사, 근무강도 등) |
| 5. 근무환경문제(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 6.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
| 7.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8. 기타(적을 것: (j14_1_other)) |

J15) Q137. 당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j15_1a) **2순위** (j15_1b)

(☞ 1순위 “없음” 허용)

- | | |
|--------------------------------|-----------------------------|
| 1.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승진, 전보, 교육 등) | 2.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
| 3. 근속, 근무태도 관련 | 4.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
| 5.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 6.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과의 불화, 선입견 |
| 7.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 8. 기타(적을 것: (j15_1_other)) |

J16) Q138.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j16_1a) **2순위** (j16_1b)

(☞ 1순위 “없음” 허용)

- | | |
|--------------|-----------------------------|
| 1. 업무실적 향상 | 2.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
| 3. 장애 및 건강관리 | 4.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
| 5. 장기근속 | 6. 기타(적을 것: (j16_1_other)) |

J17) Q139. 귀사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일반적인 복리후생제도 외에 별도로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사, 근로지원인 등) (j17_1)
2.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j17_2)
3.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 (j17_3)
4. 장애인 근로자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나 장치, 교육 등 조치 (j17_4)
5. 건강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j17_5)
6.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j17_6)
7.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지원 (j17_7)
8. 기타 (j17_8) (적을 것: (j17_8_other))
9. 없음 (j17_9)

J18) Q140. 귀사는 당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 18-1) 고용의무가 없는 경우(50인 미만) ⑥ 기입
 (☞ 18-2) 부담금감면, 장려금 등 경험 없는 경우 ⑥기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J18-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었다 (j18_1)	①	②	③	④	⑤	⑥
J18-2) 부담금 감면, 장려금 수급, 각종 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있었다 (j18_2)	①	②	③	④	⑤	⑥
J18-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j18_3)	①	②	③	④	⑤	X
J18-4)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고용유지가 이뤄졌다 (j18_4)	①	②	③	④	⑤	
J18-5)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 (j18_5)	①	②	③	④	⑤	
J18-6)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j18_6)	①	②	③	④	⑤	

J19) Q141. 귀사는 당시 다음의 항목별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J19-1)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j19_1)	①	②	③	④	⑤
J19-2) 장애인 근로자의 대인관계 (j19_2)	①	②	③	④	⑤
J19-3)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 (j19_3)	①	②	③	④	⑤
J19-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j19_4)	①	②	③	④	⑤

J20) Q142. 귀사가 현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j20_1)

1.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다(→j20-1로 이동)
2.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j20-2로 이동)

J20-1) Q143.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j20_2_1)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2.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
3. 과거 채용을 시도했으나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4.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다할 것 같아서
5.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6.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7.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8.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9.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님에 따라(상시근로자 100인 미만만 해당함)
10. 기타(적을 것: (j20_2_1_other))

J20-2) Q144.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j20_2_2)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2.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3.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4. 인력채용 자체가 없어서
5.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할지 몰라서
6.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7.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8.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9.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로 향후 즉시 채용 예정임
10. 기타(적을 것: (j20_2_2_other))

K. 재무정보

다음은 재무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단, 회계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 사업장을 포함한 기업(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재무정보를 모를 때에는 최대한 근사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K01) Q145. 2013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재무정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A)	영업비용(B)	영업이익(손실)(C=A-B)
()백만원 (k01a)	()백만원 (k01b)	()백만원 (k01c)
자산총액		부채총액
()백만원 (k01d)		()백만원 (k01e)

- 1) 매출액: 지난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을 말함
- 2) 영업비용: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매입에 투입한 매출원가와 판매와 일반관리를 위해 지불한 비용을 말함
- 3) 영업이익(손실)=매출액(A)-영업비용(B)
- 4) 자산총액: 유형자산(유형자산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형체가 있는 자산)과 무형자산(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함

→정확한 금액 수준을 모를 시 범주형으로 질문

구분	범주	
Q146. 매출액 (r_k01a)	1) 5억원 미만 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Q147. 영업비용 (r_k01b)	1) 5억원 미만 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Q148. 영업이익 (r_k01c)	0) 적자 1) 5억원 미만 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Q149. 자산총액 (r_k01d)	1) 10억원 미만 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6) 1,000억원 이상
Q150. 부채총액 (r_k01e)	1) 5억원 미만 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500억원 이상

K02) Q151. 최근 2년간 귀사의 영업이익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k02)

1. 늘어났다 2. 변화 없다 3. 줄어들었다

K03) Q152. 향후 2년간 귀사의 영업이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03)

1. 늘어날 것 2. 변화 없을 것 3. 줄어들 것

응답자 정보

Q37. 응답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근무부서		휴대폰번호	
	직책(직위)		이메일주소	

기타 특이사항

--